노무법인 로율

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, 1802호 (공덕동, 르네상스타워)

Tel 010) 2890-7948, 02)713-2022 Fax 0303) 3444-2025

smilejhjh@hanmail.net

2026. 6. 1.

■ 제 목 :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결과

■ 내용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가 ’26. 2. 26. 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「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」 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
■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현황

①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가 있거나, ②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

구분	포괄임금 활용		미활용	합계
사업장 수	정액급제 정액수당제	고정OT제도	22개소	101개소
	6개소	73개소		

■ 대상 사업장 법정수당 미지급 현황

법정수당 미지급 : 34개소 / 체불액 4억 4,800만원

연장근로 등 관리부실로 인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: 34개소

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실제 연장 · 야간 · 휴일 근로시간 수 미기재 : 27개소

법정수당 외 임금 · 퇴직금 등 금품체불 : 68개소 / 체불액 15억 4,200만원

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: 77개소

■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법 위반 주요 사례

1. 법정수당 미지급

1) A사 : 출퇴근시간을 별도 기록 · 관리하지 않고, 고정 OT를 초과한 연장 ·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(310명, 1억 23백만원)

2) B사 : 업무량 과다로 상시 연장 ·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고정OT 수당 외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, 휴일근로수당도 일부 미지급 (7명, 78백만원)

3) C사 :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에 대해 고정OT분만 지급함. 고정OT를 초과한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(14명, 25백만원)

2. 연장근로 한도 위반

1) D사 : 전산 오류 시 긴급 보수 등 휴일근무가 발생함에도 휴일근로시간 관리 소홀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(25회, 123시간)

2) E사 : 특성 상 매 학기 초 업무량이 증가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 초과 (8회, 142시간)

3) F사 : 사업 성장에 따라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연장근로 한도 지속 초과 (44회, 698시간)

■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

1.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(일터혁신 상생컨설팅)

(내용) 기업 현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의 혁신활동* 지원

*임금, 근로시간 등 10개 분야, 21개 개선과제 중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

(신청방법) '일터혁신 플랫폼'을 통해 온라인 접수(www.kwpi.or.kr)

2. HR 플랫폼 지원

(내용) HR 플랫폼* 이용료 1개소 최대 연 180만원(월 18만원)

*출퇴근 기록,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, PC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

(신청방법) 플랫폼사 홈페이지*에 서비스 확인 후 전화 · 메일 등으로 직접 신청

*플랫폼사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

■ 향후 계획

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 및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, 불응 시 사법처리할 방침.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 실시 예정

또한,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할 것이며, 익명신고센터의 제보 내용 및 건수를 분석하여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이 선정하고 연말까지 감독할 방침